##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0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이인선

우재준 • 서일준 • 임이자

김소희 • 이종배 • 김승수

구자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명권자는"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명권자는"으로, "아니한 임원에"를 "아니한 임직원에"로 한다.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 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 따른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직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
공공기관 <u>임원</u> 의 임명권자 또	임직원
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	
청한 <u>임원</u> 이 다음 각 호의 어	<u>임직원</u>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	
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②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명권
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u>자는</u>
허용되지 <u>아니한 임원에</u> 대하	<u>아니한 임직원에</u>
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	
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	
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	
할 수 있다.	

<신 설>

- 제53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

     법」 제79조에 따른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 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